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0.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적용범위 (안 제2조)

- 마포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으로 정함.

###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안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정함

### 다. 포상 (안 제6조)

- 신고내용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의 4호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 **라.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국 과장급으로,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팀장으로 정함

#### **마. 처리결과 통지 (안 제8조)**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3. 주요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345호)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결과 (조례제정후 예산편성)

다. 합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포상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시행규칙에 명시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1) 입법예고 : 2010. 2. 18 ~ 3. 10(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방송 등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②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4호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국 과장급으로 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

###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구 분	포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20만원

###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를 한 결과 위법사항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가 그 밖에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만원 상당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의 경우 월(해당 월 초일부터 해당 월 말일 기준) 신고대수가 5대 이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 상당,

10대 이상인 경우는 10대당 1만원 상당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위 경우의 포상금은 1명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5.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둘 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